

3.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0년 3월 23일
- 발의의원 : 하병문, 김동식, 김혜정, 박갑상, 박우근, 배지숙,
임태상, 이만규, 이영애, 이태손, 장상수, 홍인표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3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27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20년 3월 25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하병문 의원)

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확산사태로 인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재해·재난 등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.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개정 취지 및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피해를 조기회복하고,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)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대구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, 정부와 시민들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노력에도 불구하고 1개월 만에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73%인 6,200여명에 달하였으며³⁾, 이에 3월 15일 중앙정부는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음.
- 이후 전세계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전례없는 비상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상실, 국가 간 이동제한, 시민들의 외출 자제, 소득감소 및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도 큰 충격을 맞고 있음.
-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대구에는 21만개의 사업체에 97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, 이 중 소상공인은 18만개 사업체에 35만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의 86%, 전체 종사자의 36%를 차지하고 있으며,

3)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, 2020년 3월 19일(목) 보도자료 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발생현황’

< 사업체 및 종사자 수 >

구 분	대 구		전 국	
	전체업체	소상공인	전체업체	소상공인
사업체수(개)	210,548	180,151(85.56%)	4,103,172	3,409,094(83.08%)
종사자수(명)	967,208	345,861(35.75%)	22,234,774	6,786,249(30.52%)

(출처 : 통계청)

- 이 중 84.7%인 15만개 사업체가 연매출 3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이며, 연매출 5천만원 이하 사업체도 9만개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전례 없는 충격을 주고 있음.
- 또한,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자료⁴⁾에 의하면 대구의 2월 소비경기 지수는 85.0으로써 전월대비 19.1% 급락했으며, BC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업종별 전월대비 매출액 변동률은 약국·슈퍼마켓 등을 제외하고 전 업종에서 평균 19% 하락을 기록 중임.
- 이로 인해 특례보증지원, 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책의 신청 또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으나, 심사기간의 장기화, 대출 위주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음.
- 이에 미국·유럽·일본 등에서는 피해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'재난기본소득'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, 서울·강원·전주 등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를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임.

4) 대구경북연구원 2020년 3월 10일(화) 「대경 CEO BRIEFING」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각종 자연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.
- 금번 지원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18만 개소 정도가 예상되지만, 코로나19 사태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,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,
- 또한, 본 개정 조례안에 근거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집행 시에는 피해조사와 접수, 대상자 선정,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해당 없음.

5. 토론요지

-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-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해당 없음.